투표함 바꿔치기를 위한 비잔류형 특수봉인지 사용 의혹

○ 투표함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으나, **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**

○ '비잔류형'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등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(OPEN VOID)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뒤 기존의 투표함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를 다른 투표함에 부착하는 경우 훼손표시가 나타나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.

○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에는 (사전)투표관리관, (사전)투표참관인이 직접 서명하고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며,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뒤 제3자가 (사전)투표관리관 등 성명으로 대리 서명하는 경우 필적 대조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참관인에게 본인 필적이 아니라는 허위주장을 하도록 선동한 유튜버 ◇◇◇을 「공직선거법」 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위반으로 고발(제21대 국선)

○ 또한, (사전)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특수봉인지 일부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이송에 참여한 (사전)투표관리관, (사전)투·개표참관인에게 '투표함 보완 등에 대한 확인서'를 징구하여 (사전)투표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